

성산2동경로당설치·운영계획(안) 심 사 보 고 서

2004. 12. 3

복지도시위원회

1. 심사경과

가. 제안일자 및 제안자 : 2004. 11. 24 마포구청장

나. 회부일자 : 2004. 11. 29.

다. 상정일자 : 제108회 제2차 정례회 제 1차 위원회(2004. 12. 3)

상정, 심사, 가결

2. 제안설명요지 (제안설명자 : 김정호 사회복지과장)

가. 제안이유

사회복지사업법 제4조 제1항 및 제34조 제1항, 노인복지법 제4조 및 제37조 제1항, 지방자치법 제35조 제1항 제7호의 규정에 의거 2005년도에 신축될 노인복지시설의 설치·운영에 관하여 구의회의 의결을 얻기 위함.

나. 추진경위

- 성산2동 경로당으로 사용되는 무리울 새마을회관이 낡고 노후된 관계로 안전에 문제가 있어 동 건물 및 토지는 마포구에 기부채납 상태이므로 동 건물 철거후 경로당을 신축하여 어르신들이 보다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지낼 수 있도록 하고자 함.

다. 건립부지

연번	재 산 표 시			추정가액 (단위:천원)	취득 시기	취득사유	취득재산 소유자	비고
	지목	소재지	면적 (㎡)					
1	대지	성산동 산 41-2	165	무상	2004	기부채납	마포구	
2	건물	"	72					

라. 신축규모안

- 대지 : 165㎡(약 50평)
- 건물 : 192㎡(약 58평)
- 소요예산(추정) : 372,204천원

3.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(김건재 전문위원)

0 경로당설치·운영계획(안)은 지방자치법(2004.1.29 법률제7128호) 제35조제1항 및 사회복지사업법(2004.3.22 법률제7212호)제4조 제1항 등의 규정에 의하여 노인복지시설의 설치에 관하여 구의회 의결을 얻고자 제출하였음.

0 성산2동 경로당 설치에 대한 입안주요내용을 보면, 건립부지는 마포구 성산2동 산41-2에 위치하고 대지면적은 165㎡, 건물은 192㎡(지상2층)로 신축 예정에 있으며 총 사업비(건축비)는 372,204 천원임.

당해 부지에 위치한 무리울 새마을회관은 성산2동 경로당으로 사용되고 있는 건물로 낡고 노후화되어 안전사고가 우려되는 시설로 건물 및 토지가 마포구에 기부채납되어 등기이전 완료(2004년 7월 30일)된 상태로 현 건물을 철거하고 새로이 경로당을 신축하고자 하는 것임.

0 경로당은 노인복지법(2004.1.29 법률제7152호) 제36조에 근거하여 지역 노인들이 자율적으로 친목도모·취미활동·공동작업장 운영 및 각종 정보교환과 여가활동을 하는 노인 여가복지시설임.

2004년 8월말 현재 우리구 소재 구·사립 경로당 105개소에 등록된 회원수는 약 4,068명으로 마포구 65세이상 노인인구수 28,574명 대비 14.2%에 불과하고 마포노인종합복지관에서 지원하고 있는 건강증진, 사회교육 및 경로당 지원 등 일부 프로그램 외에는 경로당 시설의 협소성, 낙후성 및 운영 프로그램의 부재 등으로 노인들의 다양한 여가나 취미생활에 대한 욕구를 충족시켜 주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.

따라서 생활수준 향상 및 보건의료 기술의 발전에 의한 평균수명의 증가로 급속한 노령화사회(노인인구비율:2010년 10.7%예정)로 접어들고 있는 만큼 노인여가 복지시설의 현대화, 광역화 및 프로그램운영의 전문화 등 시대에 부응하는 노인복지 정책을 수립해 나가야 할 것으로 사료됨.

4. 질의 및 답변요지

- 질의요지(송태섭 위원) : 성산2동 노인정수는?
- 답변요지(김정호 사회복지과장) : 14개소임.

5. 토론요지 : 없음

6. 심사결과 : 원안가결

7. 기타 소수의견의 요지 : 없음

8. 기 타 : 없음

경로당설치·운영 계획안(案)

(성산2동경로당 신축)

의안 번호	
----------	--

제출일자 : 2004.11

제 출 자 : 마포구청장

1. 제안이유

사회복지사업법 제4조 1항 및 제34조 1항, 노인복지법 제4조 및 제37조 1항, 지방자치법 제35조 제1항 7호의 규정에 의거 2005년도에 이루어질 노인복지시설의 설치에 관하여 구의회 의결을 얻기 위함

2. 추진경위

성산2동 경로당으로 사용되는 무리울새마을회관이 낡고 노후되어 안전에 문제가 있어 동 건물 및 토지가 마포구에 기부채납 되어 동건물을 철거하고 새로이 경로당을 신축하여 어르신들이 보다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지낼수 있도록 하고자 함

3. 건립부지

일련 번호	재 산 포 시			추정가액 (단위:천원)	취득 시기	취득사유	취득재산소유자 (주소,성명)	비고
	지목	소 재 지	면적 (㎡)					
1	대지	성산동 산41-2	165	무상	2004	기부채납	마포구	
2	건물	"	72	"		"	마포구	

4. 신축규모(안)

- 대지 : 165㎡ / 건물 : 192㎡(2층)
- 추정소요예산 : 372,204천원

5. 근거

- 사회복지사업법(개정2000.01.12 : 법률제6160호) : 제4조 1항 및 제34조 1항
- 노인복지법(개정2000.01.12 : 법률제6124호) : 제4조 및 제37조 1항
- 지방자치법(개정:2002.3.25 : 법률제6669호) : 제35조 제1항 7호

【 위치도 】

위치	대지	마포구 성산2동 산 41-2	165

